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IR-20081001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8

- 02 요약
- 04 취지 및 목적
- 05 취업제한제도 운영 모니터 결과
- 14 결론

요약 **1.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여전히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자 140명(복수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중복가능) 중 133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또한 같은 기간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8명 중 6명의 취업승인이 이루어졌음.

2. 퇴직자 11명은 업무연관성이 명백해 보이는 업체에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0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4명을 제외한)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해군본부의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 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을 담당하는 해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STX조선)▶산업자원부의 반도체소자·재료 및 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하고 반도체·전자부품·중전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전기과장(하이닉스반도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3. 직·간접적 연관성 있는 업체에 취업한 공직자 109명중 67명(61%)

한편, 전체 조사대상 109명중 67명이,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7명 중 32명이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관업체에 취업했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연관성만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자가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취업해제 요구를 받고도 취업을 유지한 5명과 취업승인을 받은 6명을 더하면 전체 업무관련 기업 취업자는 취업확인·취업승인을 요청한 148명중 78명임.

4.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문제점도 여전함

2008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 및 2007년 보고서의 결과에 비교할 때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82% -> 65% -> 61%) 및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

업자(16% -> 13% -> 10%)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시민사회의 감시활동 등 사회적 문제제기로 부서관련 업체 취업 및 취업제한업체 취업이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또한 6명의 취업제한위반자를 적발하고 취업승인을 요청한 8명 가운데 2명을 제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11명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등 온정적 기준에 따른 취업 확인 등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업무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해임을 요구해야함.

5.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임의취업자로 적발된 5명은 업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였음. 또한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중희씨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을 이용 신설법인인 KB금융지주에 취업하였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전 업무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일정규모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¹⁾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등 퇴직후 취업제한강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보수의 규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검토 중으로 알려진 보수도 2억 원 가량으로 상당히 높아 법 개정을 통한 취업제한 강화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회사 등의 범위를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외형 거래액 30억 원 이상인 회사 등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회사 등과 취업제한대상 회사 등이 인수합병이나, 명의 변경,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이름이나 대표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회사 등도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법무법인과 합동 법률사무소의 경우 취업제한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1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 의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해당되는 기업이 가입된 협회를 제한하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이해충돌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과 2007년 9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이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²

지난해 9월 발표한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중 130명 취업가능 통보했으며 취업승인 신청자의 경우는 12명 모두 승인하였음. 특히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퇴직공직자 중 15명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허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까지(1년간)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음.

-
- 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소속 기관의 장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로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1.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33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09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4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7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외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40명 중 7명에 대해서 취업이 불가하다 통보했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0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4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7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a)}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b)}	기타 ^{c)}
강원도	1	1	0	0
경찰청	4	3	3	1
공정거래위원회	1	1	1	0
관세청	1	1	0	0
국민권익위원회	2	0	0	2
국방부	19	11	2	8
국세청	13	5	0	8

국토해양부	5	4	1	1
금융감독원	19	17	3	2
금융위원회	6	4	0	2
기획재정부	5	3	0	2
농림수산식품부	2	2	0	0
대통령실	3	0	0	3
방위사업청	2	2	0	0
산림청	1	1	0	0
서울산업대학교	1	0	0	1
서울시	1	1	0	0
외교통상부	5	0	0	5
중소기업청	1	1	0	0
지식경제부	12	8	1	4
통계청	1	0	0	1
해양경찰청	1	0	0	1
행정안전부	2	1	0	1
환경부	1	1	0	0
전체	109	67	11	42

※ 조사대상 :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0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4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한 부처는 현재 부처로 변경·합산하여 표시하였음

○ 다음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 2007년 9월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조사결과와의 비교.

<표 2> 2006-7년 조사결과와 비교 (명)

조사시점	2006년 조사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5개월간	2007년 조사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2007년 조사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취업확인요청자전체	59	132	140
취업제한통보	1	2	7
판단제외 ^{a)}	9	18	24
조사대상	49	112	109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b)}	40(82%)	73(65%)	67(61%)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c)}	8(16%)	15(13%)	11(10%)
기타 ^{d)}	9	39	42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a) 판단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b)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 c)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d)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 3차례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82% -> 65% -> 61%) 및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16% -> 13% -> 10%)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시민사회의 감시활동 등 사회적 문제제기로 부서관련 업체 취업 및 취업제한업체 취업이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3.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 분석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11명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함. 다음 <표 3>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의 업무관련성을 정리한 것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표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시 행령32조2항)
건설교통부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동아에스텍(주) 사장	(7호)
경찰청 대전 둔산경찰서장, 대전 서부경찰서장	(주)에스원 고문	(6호), (7호)
경찰청 동래경찰서장, 부산진경찰서장	(주)에스원 고문	(6호), (7호)
경찰청 대구 북부경찰서장	(주)에스원 고문	(6호), (7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생명보험(주)	(7호)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자전사업부장	SK씨앤씨(주) 전문위원	(7호)
국방부 조달본부 기획조정부장, 해군본부 군수 참모부장	STX조선(주) 상무	(7호)
금융감독원 조사2국 조사2팀장/ 제재심의팀장/ 조사1국 1팀장	대신증권(주) 상근감사위원	(6호), (7호)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검사기획팀장/ 조사1국 시장감시팀장/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 3반	CJ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6호), (7호)
금융감독원 심의제재국 조사심의제재팀장/ 조 사2국 조사2,3팀장/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 3반	교보증권(주) 상근감사위원	(6호), (7호)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 과장	(주)하이닉스반도체 경영전략실장	(7호)
-----------------	-------------------	------

-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남원 국토유지건설 사무소장의 동아에스텍(주) 사장 취임

국토유지건설 사무소장은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유지건설 사무소의 책임을 맡고 있음. 동아에스텍(주)는 도로안전전문기업으로 도로안전시설물 개발, 가드레일, 방호책, 옹벽, 동물보호망 등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경찰서장의 (주)에스원 고문 취임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원을 감독하고 특수경비원의 무기대여, 호송경비 등의 협조 등에 대해 권한이 있으며 대전 둔산 동래, 대구 북부 등에는 (주)에스원의 사업장이 있음. 경비업체인 (주)에스원은 가정, 상업, 빌딩, 관공서 및 학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대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취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불공정거래,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정책 수립집행을 하고 있음.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최고위 의사결정자 중의 한명임. 최근 대한생명보험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음.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자전사업부장의 SK씨앤씨(주) 전문위원 취임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자전사업부장은 감시·정찰·정보·전자전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음. SK씨앤씨(주) 국

방 자원관리와 전장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정보통신분야의 군납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국방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의 STX조선(주) 상무 취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음. STX조선(주)는 중·소형 전투함정 연안경비함정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금융감독원 조사2국 조사2팀장의 대신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취임

금감원 조사2국은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함. 대신증권(주)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선물업 등을 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검사기획팀장의 CJ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취임

금감원 증권검사2국은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업무 등을 담당함. CJ투자증권(주)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의 수탁 등을 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금융감독원 조사2국 조사3팀장의 교보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취임

금감원 조사2국은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함. 교보증권(주)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금융선물 및 옵션의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위탁매매 등을 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반도체전기 과장의 (주)하이닉스반도체 경영전략실장 취임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 과장은 반도체소자·재료 및 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반도체·중전기기·전자부품산업의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반도체·중전기기·전자부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주)하이닉스반도체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기계, 기구 및 이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 등의 제작, 조립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4.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조사대상의 61%에 달하는 67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음.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 21명중 11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6명 중 32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표4는 국방·경제관련 주요부처의 취업현황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역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³

〈표 4〉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 업체
국방부 퇴직자 (9명)	국방정보본부 군사정보부차장	삼성테크윈(주) 비상임고문 [군납업]
	해군본부 부산기지건설단장/ 전투발전단장	UG 넥스원(주) 고문 [방위산업체]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차장/ 군수지원혁신TF팀	(주)한진중공업 상무 [방위산업체]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주)로템 부장 [방위산업체]
	조달본부 시설부장/ 연합사 공병부장/ 육군본부 공병감	삼성물산(주) 고문 [군납업]

- 3 참여연대가 2007년 6월 4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송행위의 대리,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영구히 금지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함.

	합참 전력발전부 차장/ 공군 항공사업단장	LIIG넥스원(주) 비상근고문 [방위산업체]
	3훈련비행단장, 연합사 계획처장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보 대우 [방위산업체]
	교육사 정보학교 전발부장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방위산업체]
	국방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감찰참모	삼양화학공업(주) 상무이사 [방위산업체]
방위사업청(2명)	연구개발관실 체계개발과장/ 국과연 4본부 2부	LIIG넥스원(주) 상임고문 [방위산업체]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단/ 기술정팀 기술획득파트장 전문위원	삼성탈레스(주) 상무보 [방위산업체]
국세청 (5명)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중부청 조사2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벽산건설(주) 사외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유)삼일회계법인 부장
	재산법인세과	한영회계법인 senior-manager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장/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	(주)CJ홈쇼핑
금융감독원 (14명)	감사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 1팀/ 자문역	대우캐피탈 상근감사
	비은행검사1국 검사4팀장/ 총무국 재산관리팀장/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 1팀장	KB자산운용(주) 상근감사
	회계감독 1국, 2국 전문 심의위원	한국기업평가(주) 사외이사
	은행검사1국 검사2팀장/ 조사2국 조사3,4,5팀장/ 은행검사 1국 은행 5팀장	(주)제일상호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국제업무국 동경사무소장, 북경사무소장	한국씨티은행 상근감사
	비은행검사국장/ 연수운영 1팀	대구은행 상근감사
	비은행감독국장/ 연수운영1팀	신한은행 상근감사
	은행검사2국장	KB투자증권 상근감사
	상호저축은행팀 2팀, 5팀, 6팀	대한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 상근감사
	비은행1국 관리지도팀장/ 국제업무국 국제감독지원실장/ 조사2국장	(주)SC제일은행 상근감사
	인력개발실장/ 인력개발실 연수운영 1팀	SK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인력개발실 연수운영 1팀	메리츠증권(주)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4명)	전문심의위원	국민은행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이사	한국자금중개(주) 부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한국산업은행 감사	한화증권 고문
기획재정부(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유럽부흥 개발은행 이사/ 보직대기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중소기업은행 여산지원본부장	BC카드(주) 부사장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브릿지증권(주) ->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대표이사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거나, 비은행 관련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

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과)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 관료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대다수의 국방부 퇴직자들은 군수업체로 취업하고 있음. 군조직의 특성상 조직이 폐쇄적이고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하므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음.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제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로 분류하지 못하였으나 취업한 업체가 대부분 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방위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과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행위를 제한해야함.

5.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표 5〉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소속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취업제한사유
금융 원	손보분쟁조정실장/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2급)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6호
	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장/ 생보분쟁조정팀장/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2급)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6호
	대구지원장/ 연수운영 1팀(1급)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6호
	감사실 보험검사 1국장/연수운영 1팀(1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6호
	검사총괄국장/ 검사지원국장/ 연수운영1팀(1급)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7호
국방 부	공군 군참모정비처장/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 공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	(주)휴니드테크놀로지 상무이사	5호
금융 위원 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부산은행 사외이사	7호

○ 표 5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임. 2007년 132건 중 2명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판단한 반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을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취업불가를 통보한 것임. 2008년

취업제한제도 운영이 일정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금융감독원 퇴직자 5명은 애초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임의취업하고 적발이후 취업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였음.⁴

6. 취업승인 사례

○ 취업제한대상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이 가능함. 2007년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예외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승인신청자 12명 전원에 대해 취업을 승인함. 그러나 이번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8명의 승인신청자 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음. 취업승인 결정에서도 불승인한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일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취업승인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8명 중 6명의 취업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온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표 6〉 취업승인 사례

소속	직무	취업 업체 및 직위	승인여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04.3-05.3) 예산실장(05.3-05.5) 재정운용실장(05.3-06.8) 차관(06.8-07.3)	서울보증보험 (주) 사외이사	승인
국세청	마산서 조사과(05.1-2) 진주서 하동지서(05.2-06.9) 마산서 세원관리3과(06.9-.07.6) 재산법인세과(07.7-08.1)	(주)경남은행 세무사	승인
	동대문서 세원관리2과(05.1-2) 의정부서 세원관리1과(05.2-06.2)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06.2-06.9) 송파서 세원관리5과(06.9-07.6), 재산세2과(07.7-08.1)	대한생명보험 (주) 과장	승인
대검찰청	창원지검公安부검사(05.1-06..2) 서울중앙지검 공판제1부(06.2-8) 公安제2부(06.8-07.3) 公安제1부(07.3-07.12)	GS건설(주) 상무이사	승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경영관리본부장 (05.6-08.4)	한전 KPS(주) 사장	승인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산업은행 투자금융본부장(05.4-05.10) 지역금융본부장(05.10-06.5) 기업금융본부장(06.5-07.2) 기획관리본부장(07.2-08.3)	성신양회(주) 부회장	승인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00.7-07.2)	(주)농협사료 대표이사	불승인
국방부	공군 군참모정비처장(04.11-05.12)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06.1-07.11) 공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07.11-08.1)	(주)휴니드테크놀로지	불승인

7.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나 제한하지 못한 사례

○ 업무연관성 유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규모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가 명백한 경우에도 신설법인의 경우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맹점으로 비판받고 있음. 지난 2007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하던 김중회씨가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취업했지만 KB금융지주는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지 않음⁵.

○ 이 경우는 명백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취업제한제도의 규제에서 벗어난 경우로 입법을 통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것임.

<표 7>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나 제한하지 못한 사례

성명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취업제한사유	결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KB금융지주 사장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신설법인으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포함되지 않음

8. 취업제한위반 현황

<표 8> 취업제한 관련 위반현황

소속기관	직무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예정일	위반내용 및 조치경과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03.10-06.10)	06.10.11	대한항공(주)	자문위원	06.11.1	임의취업위원회 의결 (자진퇴사)
금감원	보험검사1국	07.6.1	메리츠화재	상근감사	07.6.14	임의취업

5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명단을 전년도 말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신설법인의 경우 고시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 그 해 취업자의 경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검사기획팀장(03.11-06.4) 생보분쟁조정팀장(06.4-07.4)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2급)(07.4-07.6)	3	해상보험(주)			위원회 의결 소송제기
금감원	손보분쟁조정실장(04.4-07.4)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2급)(07.4-07.6)	07.6.7	미래에셋 증권(주)	상근감사	07.6.8	임의취업 위원회 의결 소송제기
금감원	대구지원장(03.4-05.1) 연수운영1팀(1급)(05.1-07.5)	07.5.2 3	동양종합 금융증권(주)	상근감사	07.5.25	임의취업 위원회 의결 소송제기
금감원	감사실(04.4-06.4) 보험검사1국장(06.4-07.3) 연수운영 1팀(1급)(07.3-07.5)	07.5.3 0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	07.5.31	임의취업 위원회 의결 소송제기
금감원	검사총괄국장(04.4-05.1) 검사지원국장(05.1-07.3) 연수운영1팀(1급)(07.3-07.6)	07.6.7	현대캐피탈 (주)	상근감사	07.6.8	임의취업 위원회 의결 소송제기

○ 조사기간 동안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총 6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5명에 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퇴직후 이해충돌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줌. 특히 적발한 5명의 퇴직자는 적발 이후 위원회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서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변경하였음. 현재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권자가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취업을 유지하고 각하되더라도 이후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그러나 변경이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취업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소송을 통한 취업제한제도의 무력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필요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 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거듭된 지적이 있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제도운동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운영에서는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취업확인결과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132명중 2명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밝혀졌고 2008년 조사에서는 140명중 7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2007년에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 요청자 가운데 12명 전원을 취업승인 하였으나 2008년에는 8명 가운데 2명을 제한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0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4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총 6명이었으며 그중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5명에 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주로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적발된 5명의 퇴직자는 적발 이후 위원회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함으로 취업을 유지 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8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소송을 통한 취업제한제도의 무력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바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의견서 별첨)를 제출한바 있으며,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안을 준비 중에 있음.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퇴직제한제도 보완을 위해 법 개정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임.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81001 <>

발 간 일 | 2008. 10. 6 (총 17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장정욱 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